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005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19.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10,880,000원의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9

가. 원고는 2017. 8. 30. [redacted]구 B, C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다음 2017.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주택의 시가표준액 54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5,232,000원, 지방교육세 870,400원, 농어촌특별세 1,088,000원 합계 17,190,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제1 주택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0.8%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납부한 세액 중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한 취득세 등 합계 10,88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5.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주민등록표에서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자(子) D이 [redacted]시 [redacted]구 E, F호(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2011. 5. 30.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으로 원고가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9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D이 동일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었더라도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들고 있고, 나목은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을 규정하며, 제1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들고 있고,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며, 제6조 제19호는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9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을 요건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감면규정으로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D이 2011. 5. 30. 미국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9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D이 2011. 5. 30. 출국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1가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 문언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주택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9

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9

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